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논산시의회 의장



2023년 6월 12일

논산시의회 규칙 제16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의결로 회기중” 을 “회기 중” 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 을 “시정전반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야 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2.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1. 신청서 제출일 : 시정질문일 5일 전

2. 질문서 송부일 : 질문일 4일 전

3. 답변서 제출일 : 답변일 1일 전

제73조의3제1항 중 “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을 “회기 중에” 로,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을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로, “의장” 을 “할 것을 의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을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으로,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을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그” 를 “필요한 경우 그” 로, “정한다” 를 “정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 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의3제6항(중전의 제5항) 단서 중 “그 시간 3분의 1 범위” 를 “그 시간을 20분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10분” 을 “15분” 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시간을 10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의3제7항(중전의 제6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후단 신설>

<신 설>

③ (생 략)

제73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

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시정질문) ① -----
회기 중 ----- 시정 전반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 -----.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

③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토요일·공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야 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2.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1. 신청서 제출일 : 시정질문일

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 4일 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 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 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5일 전

2. 질문서 송부일 : 질문일 4일 전

3. 답변서 제출일 : 답변일 1일 전

<삭 제>

<삭 제>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

회기 중에 -----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

----- 할 것을 의장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

③ -----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
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
분을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⑦ (생략)

----- 필요한 경우 그 -----
----- 정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

----- 그 시간을
20분 이내-----.

⑦ -----
----- 15분 -----

-----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시간을 10분 이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
지 아니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73조의2(시정질문)(신설 2020.9.21.)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③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 4일 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신설 2020.9.21.)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